



자주하는 질문 FAQ

Q 1. 검사받을 때 쓰였던 모든 비용이 환급 되는 것 인가요?

검사비용 지원사업은 세관 검사에 쓰여진 상·하차료, 적출·입료, 운송료에 대해 일정 지급율로 지급하는 것으로 세관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전체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Q 2. 검사비용 지원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화물을 수출입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자(화주)가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주의 위임을 받은 관세사·관세법인·통관 취급법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Q 3. 검사비용 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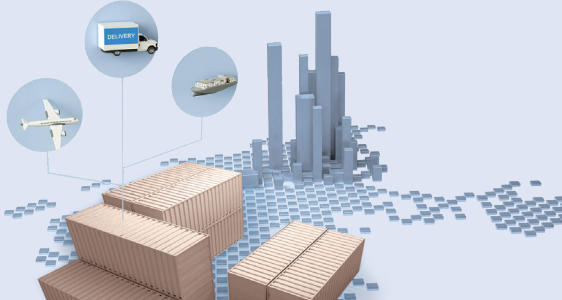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4. 신청 시 신청서 작성과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①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사본이 제출되어야 하고,
- ② 비용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 특히,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에 따라서,
 -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하는 경우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경우는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와 함께 해당 검사비용에 대한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5. 검사비용 지급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검사비용 지원금을 허위, 과다 청구하거나 오지급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과 이자가 환수되며, 제재부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상담창구

유선상담

소속	부서명	연락처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제도안내)	042-481-1142 042-481-7904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신청 · 심사 문의)	02-2107-2534(대표번호)
		02-2107-2545(대표번호)
		02-2107-2523
		02-2107-2529
		02-2107-2530
		02-2107-2531
		02-2107-2533
		02-2107-2537
		02-2107-2538
		02-2107-2539
		02-2107-2544
		(FAX) 02-857-3282
		인천세관
서울세관	02-510-1382	
부산세관	051-620-6953	
대구세관	053-230-5183	
광주세관	062-975-8192	
평택세관	031-8054-7043	
관세청 고객센터		125
시스템 관련 문의		1544-1285

인터넷 상담

● 검사비용 지원 제도 관련

- 관세청고객지원센터(<https://www.customs.go.kr/call/main.do>)
- 이용안내 ▶ 인터넷상담신청 ▶ 신청하기

● 시스템 관련 상담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고객센터 ▶ 커뮤니티 ▶ 질의응답 ▶ 신규버튼 클릭 후 상담내용 등록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01 제도개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부담경감을 국가가 수출입화물 검사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수출입화물 검사는 마약, 총기, 불법 식의약품 등의 밀수출입 차단을 위해 필수적이고, 세관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검사 비용 등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관세법제173조)

02 지원범위

대상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신청일 기준 체납자는 제외

검사유형 ① 관리대상화물 수입검사 (반입후 검사 제외)
② 부두직통관 수입검사
③ 적재지 수출검사
④ 신고지 수출검사 (보세구역 등 반입후 신고대상에 한함)

물품범위 검사결과 수출입 관련 법령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화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지원범위 컨테이너 ①상·하차료, ②운송료, ③적출·입료
※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03 검사비용 지원 신청절차

사전준비

통관고유부호 받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신청일 기준 체납자는 제외

유니패스 회원가입

· 유니패스(관세청 인터넷 전자통관시스템)에 회원가입하기
- 웹사이트주소
<https://unipass.customs.go.kr>

신고인부호 받기

· 신고인 부호를 부여받아야 화주가 직접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 가능
(신고인 부호 체계 : 일련번호 5자리 생성)

신청서 제출

유니패스 로그인

·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 로그인

검사비용 지급신청서 작성

· 신청내역 : 해당화물 정보 및 화주정보, 계좌정보, 검사비용 기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사본이 제출되어야 하고, 비용 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와 세금 계산서가 필요)

·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첨부서류 업로드 후 전송
※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오류 통보**

· 전송 시 오류로 통보되면 해당 항목을 정정한 후 재전송하거나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로 문의 (☎1544-1285)

· 전산장애로 유니패스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에 팩스(02-857-3282) 또는 이메일(customsicc@korea.kr)로 신청 가능

접수 확인

· 지급신청서 접수 확인
(유니패스 ▶ 전자신고 ▶ 처리현황)
- 처리현황 조회 생성

04 검사비용 지원 심사 및 지급절차

심사·검증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여부 등 심사

- 서류보완 :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심사 후 보완요구 받은 경우 요구통보일로부터 15일 내 추가자료 제출
- 각하 : 보완요구 자료 심사결과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보완요구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 정정신청 : 신청내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취하신청 : 신청내역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 장소, 비용 해당 여부 및 신청인 적정 여부 심사

• 검사비용 심사 후 남아있는 예산을 확인하여 지급예정 금액 산정

- 지급예정 : 예산 확인 결과 지급기한 내 지급이 가능한 경우
- 지급보류
 - ① 예산 부족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 일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② 검사대상 물품에 대한 분석의뢰 또는 품목분류 질의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지급중단 : 예산 부족의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검사비용 지급예정 금액 확정

지 급

· 신청서 제출된 화주 계좌로 검사비용 지급

05 지급비율 변경 등

지급비율 등 변경

· 검사비용 지급 추이와 예산잔액을 고려하여 지급상한, 지급비율* 등 조정 가능
※ **지급률 60%를 적용(‘23.9.1~)중이며 변경 가능**

특별신청 기간

· 관세청장은 신청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23년 예산 조기 소진으로 '24.1.22~2.29에 운영 예정, 예산 소진 시점에 검사비용 신청을 하지 못한 건과 예산이 소진되기 전 이미 신청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한 건 접수

